(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	자1	종피보험	자2	종피보험	자3	
	보험사7		건강보험	1			
보장성	110-00-00)***	ABCDEFB(003	750101-*****	김길동	151,150
	보험사?	7	무배당 정기	기보1			
보장성	110-00-00)***	ABCDEFB(001	750101-*****	김길동	240,000
	보험사7		무배당 Super 큰병 110	이기는보험			
보장성	110-00-00)***	L1I0500000	1151	750101-****	김길동	254,244
	보험사?	7	무배당 보	험2			
보장성	110-00-00)***	ABCDEFB(ABCDEFB002		김길동	254,244
	보험사	7	무배당 우리가족프리미엄 정기 보				
보장성	110-00-00)***	L1H0400000102		750101-*****	김길동	240,0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	자1	종피보험	종피보험자2		자3	
	보험사	3	무배당 T H E 건강	한치아보험 (
보장성	110-00-00)***	15214113	383	750101-****	김길동	373,200
	보험사7		부모님 건강도	보험1103			
보장성	110-00-00)***	3R0190000	00222	750101-*****	김길동	151,150
	보험사6		스마트통합경	등신(무)			
보장성	110-00-00)***	1720939	56	750101-*****	김길동	300,000
	보험사5		하이카 개인용				
보장성	110-00-00)***	M2015126696900000		750101-*****	김길동	434,330
	인별합계금액						2,398,318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	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	종피보험자1		자2	종피보험	자3	
	보험사9		(무)ACE 우리아이행	복보험(0806,			
보장성	110-00-00)***	KID216000	6309	080101-*****	김영희	170,400
	보험사9		(무)ACE 우리아이행	복보험(0806,			
보장성	110-00-00)***	KID216000	6312	990101-*****	김철수	170,400
	보험사13		0605다모아가족	사랑보험			
보장성	110-00-00)***	4070281459	90000	810101-*****	홍부인	453,600
	보험사2		뉴-웰빙케(거 암			
보장성	110-00-00***		981157964		750101-*****	김길동	441,000
	보험사11		닥터CI간병				
보장성	110-00-00)***	6C138050		420101-*****	김할아	888,0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	자2	종피보험	자3	
	보험사5		무배당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 자?				
보장성	110-00-00)***	L01001188	3385	810101-*****	홍부인	240,000
	보험사5		무배당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 자?				
보장성	110-00-00)***	L01001197	7884	750101-*****	김길동	228,000
	보험사3		무배당 T H E 건강한	한치아보험표			
보장성	110-00-00)***	24692E10)21	810101-****	홍부인	196,280
	보험사7		베스트 건강 성	상해보험			
보장성	110-00-00***		04154000005475		810101-*****	홍부인	609,240
	보험사7		상해보험1				
보장성	110-00-00)***	ABCDEFB004		810101-****	홍부인	609,240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	자2	종피보험	자3	
	보험사1	.0	신한아이사랑	방보험			
보장성	110-00-00)***	00092303	378	080101-****	김영희	408,000
	보험사10		신한아이사랑	방보험			
보장성	110-00-00)***	00092299	321	990101-*****	김철수	408,000
	보험사2		웰빙플러스인	암보험			
보장성	110-00-00)***	9815406	58	810101-*****	홍부인	297,600
	보험사13		행복을주는가족사랑보험(0809)				
보장성	110-00-00)***	40902289350000		750101-*****	김길동	665,472
	인별합계금액			5,785,232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일련번호: 20161226-00911171



없습니다. 전자문서 진본여부 확인은 홈페이지(www.hometax.go.kr) 자료실을 참고 바랍니다.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00-00*	외**	일반	61,000
0-00-00*	<u>o</u> **	일반	22,800
0-00-00*	약**	일반	16,900
0-00-00*	약**	일반	39,030
0-00-00*	<u>o</u> **	일반	13,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52,73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52,73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영희	08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00-00*	의**	일반	18,200
0-00-00*	약**	일반	16,750
0-00-00*	약**	일반	16,660
0-00-00*	의**	일반	35,2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86,81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86,81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00-00*	<u>○</u> **	일반	75,1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75,1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75,1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교육비]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철수	99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종류	학교명	사업자번호	지출금액 계
고등학교	***고등학교	**0-00-00***	819,480
인별합계금액			819,480

- 1. (아이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포함)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 부담액
- 3. 공제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교육비]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영희	08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종류	학교명	사업자번호	지출금액 계
초등학교	***초등학교	**0-00-00***	819,480
인별합계금액			819,480

- 1. (아이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포함)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 부담액
- 3. 공제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직업훈련비]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수강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직업훈련비 납입내역 (단위:원)

교육기관명	사업자번호	과정명	과정코드	지출금액 계
직업훈련학교1	111-11-11***	지게차운전	ACD2013200044711322	70,000
직업훈련학교2	222-22-22***	3톤미만소형굴삭기조종교육	ACD201320004643328	90,000
합계금액				160,000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직업훈련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2. 공제대상금액한도 : 한도 없음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교복구입비]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철수	990101-*****

■ 교복구입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호	지출금액 계
333-33-33***	교복회사1	44,000
444-44-44***	교복회사2	33,000
인별합계금액		77,000

1. 세액공제대상금액 및 공제대상금액한도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용만 해당되며 학생 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11,692,064		
전통시장	32,000	인별합계금액	11,826,264
대중교통	102,200		

■ 2015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7,505,715
대중교통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전통시장사용액+대중교통사용액)
일반	3,959,940	
전통시장	7,957,230	842,520
대중교통	336,500	
인별합계금액	12,253,67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00-00-00***	카드사2	일반	0
100-00-00***	카드사4	일반	3,959,940
100-00-00***	카드사4	전통시장	7,957,230
100-00-00***	카드사4	대중교통	336,50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전통시장사용액+대중교통사용액)
일반	2,341,230	
전통시장	40,000	
대중교통	46,050	
인별합계금액	2,427,28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00-00-00***	카드사3	일반	1,099,420
100-00-00***	카드사3	전통시장	40,000
100-00-00***	카드사3	대중교통	46,050
100-00-00***	카드사4	일반	1,241,810
100-00-00***	카드사4	전통시장	0
100-00-00***	카드사4	대중교통	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9,021,120		
전통시장	329,050	인별합계금액	9,350,170
대중교통	0		

■ 2015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9,461,290
대중교통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일반	6,926,450	
전통시장	2,500	5,043,840
대중교통	0	
인별합계금액	6,928,95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00-00-00***	카드사1	일반	6,687,990
100-00-00***	카드사1	전통시장	0
100-00-00***	카드사2	일반	238,460
100-00-00***	카드사2	전통시장	2,50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일반	3,343,298	
전통시장	39,400	
대중교통	40,600	
인별합계금액	3,423,298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00-00-00***	카드사3	일반	3,055,868
100-00-00***	카드사3	전통시장	39,400
100-00-00***	카드사3	대중교통	40,600
100-00-00***	카드사4	일반	287,43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0				ì
전통시장	0	ç	· 일별합계금액	0	ı
대중교통	0				1

■ 2015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546,030
대중교 통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일반	1,320,770	
전통시장	0	1,061,470
대중교통	0	
인별합계금액	1,320,77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2020 (2.2.4) 0 11 1			(211.2)			
			월별 공제	대상금액		
칭그엽스즈	, , , , ,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5월	6월	7월	8월	공제대상금액 합계
		9월	10월	11월	12월	
		128,550	366,080	128,510	92,87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05,630	239,830	137,160	94,120	1,320,770
		28,020	0	0	0	
		0	0	0	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거래	0	0	0	0	0
		0	0	0	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철수	99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일반	8,800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인별합계금액	8,80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철수	99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ねユの人ろ	조근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5월	6월	7월	8월	공제대상금액 합계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4,600	4,200	0	0	8,800
		0	0	0	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영희	08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일반	8,800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인별합계금액	8,80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영희	08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ᅯ그연스즈	조근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5월	6월	7월	8월	공제대상금액 합계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8,800	8,800
		0	0	0	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26-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일반	8,800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인별합계금액	8,80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ねつの人ろ	조 글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5월	6월	7월	8월	공제대상금액 합계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8,800	8,800
		0	0	0	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28-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펀드명	가입일자	연납입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퇴근연금1 (800-00-12***)	CB9FD28E9B7D157B	고배당소득공제 (주식) C	2014-03-24	2,500,000	1,000,000
퇴근연금1 (800-00-12***)	0A0125EC4D82A56	소득공제 (주식) C	2014-03-24	2,500,000	1,000,000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2. 가입요건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소득공제 배제 : ①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② 가입일 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 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사업사인모)	(영품명)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내장책	
대한민국은행1	무주택자의중도금 대출 (자금대출 B)	2016-01-16 2035-01-16	20년	2016-01-16	2016-01-16	30,000,000	30,000,000	
(700-00-12***)	(자금대출 B)	300,000,000	300,000,00	300,000,000	40,000,000	30,000,000	30,000,000	
대한민국은행2	무주택자의중도금 대출 (모기지론 B형)	2016-11-24 2030-11-24	15년	2016-11-24	2016-11-24	20,000,000	20,000,000	
(700-00-12***)	(모기지론 B형)	100,000,000	0	0	30,000,000			
대한민국은행1	기존주택구입	2016-10-11 2025-10-11	10년	2016-10-11	2016-10-11	10,000,000	10,000,000	
(700-00-12***)	(자금대출 C형)	80,000,000	0	80,000,000	15,000,000		, ,	
대한민국은행2	주택분양권대출 (모기지론 B형)	2016-06-06 2045-10-15	30년	2016-06-06	2016-06-06	22,000,000	22,000,000	
(700-00-12***)	(보기시론 B형)	200,000,000	200,000,00	0	32,000,000	22,000,000	22,300,000	

- 1.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대한민국은행3	700-00-12***	756956E957	2008-04-07	2,378,388
대한민국은행3	700-00-12***	C929D5799C	2007-06-05	656,420
대한민국은행3	700-00-12***	EB888D6951	2007-06-20	1,544,400
대한민국은행4	700-00-12***	6F4B5D118	2007-06-14	972,200
합 계				5,551,408

- 1.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
- 2.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 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주택마련저축회사1 (987-65-43***)	B85B9A2B7364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심유인홍팡서	2010-12-28	6,000,000
합 계					6,000,000

- 1.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현재)가 본인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 ('14.12.31. 이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가능)
- ※ '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공제 가능
- ※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 2.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3. 재외국민, 외국인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개인연금저축]

(조회기간 : 2016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개인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계좌/증권번호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납입금액 계
보험사11	110-00-00***	2A4D3DD2B	1995-06-26	2025-06-26	600,000
합 계					600,000

- ※ 개인연금저축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1.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연금저축]

(조회기간 : 2016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연도 납입금액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순납입금액
계좌번호		납입금액	인출금액	
연금저축1	800-00-12***	1 200 000	0	1 200 000
3878990	0510001	1,200,000		1,200,000
연금저축1	800-00-12***	1 200 000	0	1 200 000
851FC	DDE99	1,200,000	0	1,200,000
순납입금	금액 합계			2,400,000

-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1.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간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
-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한)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퇴직연금]

(조회기간 : 2016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퇴직연금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연도 납입금액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스나이그 애	
계좌번호	연금구분	납입금액	인출금액	순납입금액	
퇴근연금1	800-00-12***	2,400,000	0	2,400,000	
79D1AB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00,000	0	2,400,000	
순납입금	금액 합계			2,400,000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1.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회사 부담금 제외)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3. 세액금제대상금액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함)

일련번호: 20161226-00911171



전자문서(pdf파일)로 발급된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입니다. 전자문서는 출력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진본여부 확인은 홈페이지(www.hometax.go.kr) 자료실을 참고 바랍니다.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조회기간 : 2016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공제부금 납입현황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대상기간	납입방법
ABCDEFA90***	2016-01-01	월납(Month)
ABCDEFA90	2016-12-31	월립(MOHUI)

(단위:원)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01 월	2016-01-07	250,000	07 월	2016-07-05	250,000
02 월	2016-02-05	250,000	08 월	2016-08-05	250,000
03 월	2016-03-05	250,000	09 월	2016-09-05	250,000
04 월	2016-04-05	250,000	10 월	2016-10-07	250,000
05 월	2016-05-06	250,000	11 월	2016-11-05	250,000
06 월	2016-06-05	250,000	12 월	2016-12-05	250,000
소득	· 공제대상액	3,000,000	납입	입금액 계	3,000,000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불입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불입액이 조회됩니다.

1. 공제대상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사업소득자)

2. 공제대상금액 : 연간 불입액 (연 300만원 한도)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16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기부자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991-00-00000	기부금단체1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31,000	30,000	1,000
992-00-00000	기부금단체2	정치자금기부금	90,000	90,000	0
993-00-00000	기부금단체3	법정기부금	10,000	10,000	0

- \times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사업소득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 ▶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대상금액 공제한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16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기부자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992-00-00000	기부금단체2	정치자금기부금	120,000	120,000	0
993-00-00000	기부금단체3	법정기부금	30,000	30,000	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사업소득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 ▶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대상금액 공제한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31,260	2,040	0	0
02월	31,260	2,040	0	0
03월	31,260	2,040	475,850	31,160
04월	31,260	2,040	0	0
05월	31,260	2,040	1,427,550	93,480
06월	31,260	2,040	475,850	31,160
07월	31,260	2,040	0	0
08월	31,260	2,040	0	0
09월	31,260	2,040	0	0
10월	31,260	2,040	0	0
11월	31,260	2,040	0	0
12월	31,260	2,040	0	0
연말정산	-3,720	-240		
합계	371,400	24,240	2,379,250	155,800
총합계				2,930,690

※근로 제공 기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내역을 제공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별 납부액이 제공됩니다.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189,450	0
02월	189,450	0
03월	189,450	0
04월	189,450	0
05월	189,450	0
06월	189,450	0
07월	195,300	0
08월	195,300	0
09월	195,300	0
10월	195,300	0
11월	195,300	0
12월	195,300	0
추납보험	0	
실업크리	0	
합계	2,308,500	0
	2,308,500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등은 납부금액이 제공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일부 월로 선택한 경우에도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련번호: 20161226-00911171



전자문서(pdf파일)로 발급된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입니다. 전자문서는 출력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진본여부 확인은 홈페이지(www.hometax.go.kr) 자료실을 참고 바랍니다.